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퇴 거불응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퇴거불응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3. 29. 2022고단2436, 2022고단2797(병합), 2022고단332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임두환(기소), 최혜민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수인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금고 2월, 판시 제2,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금 200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